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침

제정 2023.07.13.

개정 2026.06.16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약으로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6.06.16.)

제2조(지원시기)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연 1회 지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정산 또는 연차보고가 완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
간접비	연구개발능률성과급
2천만 원 이상	2백만 원 + 2천만 원 초과 간접비 징수액의 7%
2천만 원 미만	간접비 징수액의 10%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본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은 [별표1]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인력 평가표에 의한다.(신설 2026.06.16.)

제4조(지원형태)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. 다만,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게 성과급 배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26.06.16.)

제5조(지원제한) ① 지원기관의 별도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「간접비 징수 및 관리·운영 지침」에 따른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은 연구과제

의 경우 동 지침에 따른 징수율로 계상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에 배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한다.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시기 이전에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련 목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경비처리된 금액을 제하고 지원한다.

③ 연구사업의 중단, 실패, 결과 미제출, 회계오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전 지침(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지침 2023년 07월 13일 폐지)에 따른다.

제3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인력 평가표

☐ 인 적 사 항

소 속		직 급	
성 명		담 당 업 무	

☐ 평 가 내 역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
기여도	연구지원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는가	20	
연구관리 지식수준	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업무 지식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가	20	
업무추진력	연구지원업무에 대하여 계획하고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였는가	20	
의사소통능력	연구지원업무 수행 시 특정 상황에 대하여 말이나 문서로서 명확하게 전달하는가	20	
문제해결능력	연구지원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	10	
준법성 및 책임감	연구지원업무에 준법성을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임하였는가	10	
합계			

☐ 연구지원업무 종합평가

종합등급	A	B	C	D
종합점수	90점이상	(80점이상~90점미만)	(70점이상~80점미만)	(60점이상~70점미만)
지원액(원)	700,000	500,000	400,000	0

평가의견	평 가 자

년 월 일

평가자 소속 : 직위 : 성명 (인